

신학대학원 학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학칙은 기독교대한성결교회의 교리에 입각하여 교회사역자와 전문사역자를 양성하고 학문을 심오하게 연구하는 능력과 창조력을 함양케하며, 신학대학원의 교육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학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목표) 신학대학원의 교육목표는 다음과 같다.

1. 성결한 사역자를 양성하는 신학교육
2. 지상명령을 구현하는 체험적 영성교육
3. 이웃과 사회를 섬기는 실천적 신앙교육
4. 공동체를 세우는 전인적 인성교육

제3조(과정) 본 신학대학원에는 석사학위과정(M.Div.)을 둔다.

제4조(입학정원) ① 신학대학원 학위과정의 입학정원은 별표1과 같다.

②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자의 정원은 1항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별도로 있는 것으로 한다.

1. 교육부가 정하는 위탁학생
2. 북한이탈주민 및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학생
3.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과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

제2장 입학(편입학, 재입학 포함)

제5조(입학시기) 입학(편입학 및 재입학을 포함한다)시기는 매 학기 초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제6조(입학자격) 신학대학원 학위과정의 입학을 지원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 ① 국내의 4년제 대학 졸업자로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취득 예정인 자.
- ② 기타 법령에 의하여 위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신학대학원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자.
- ③ 위 각항의 지원자격을 갖춘 자중에서 신학대학원의 특성에 따른 자세한 지원 자격은 신학대학원 학칙시행세칙 및 내규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입학전형) 입학전형의 종류와 방법은 다음과 같다.

- ① 입학전형은 일반전형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특별전형을 실시할 수 있다.
- ②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의 방법은 서류심사, 필기시험 및 구술시험 등에서 선택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그 일정과 방법은 별도로 신학대학원교수회에서 정한다.

제8조(지원절차) 신학대학원에 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고 전형료를

를 납입하여야 한다.

제9조(편입학) 편입학은 당해 학년도 입학정원에서 재학생수를 뺀 범위 내에서 허가하며 편입학 자격, 절차 및 학점인정 등 세부적인 사항은 학칙시행세칙 및 내규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재입학) 자퇴한 자 또는 제적된 자가 재입학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해 학년도 입학정원에서 재학생수를 뺀 범위내에서 소정의 절차를 거쳐 재입학을 허가하며, 재입학 절차 등 세부적 사항은 학칙시행세칙 및 내규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장 등록, 휴학, 복학, 자퇴, 제적

제11조(등록) 매 학기 소정 기간 내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12조(휴학) ① 질병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개강 후 5주 이상 수업을 못할 경우는 신학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 휴학 할 수 있다.

② 휴학기간은 통산하여 수업연한을 초과할 수 없다. 단, 군입대, 출산·육아, 질병휴학은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3조(복학) 휴학자의 복학은 매학기 초부터 30일 이내에 소정의 절차를 거쳐 복학원을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4조(자퇴) 자진 퇴학하고자 하는 자는 자퇴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제적) 다음 각 호의1에 해당하는 자는 제적처리 한다.

1. 휴학기간이 만료되어도 복학하지 아니한 자.
2. 소정기간 내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
3. 재학연한을 초과한 자.
4. 학력이 열등하여 진보의 가망이 없는 자.

제4장 수업연한, 교과과정, 학점, 수료 및 학위수여

제16조(수업연한, 재학연한) ①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은 별표2와 같다.

②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7조(수업일수) 수업일수는 매 학기 15주 이상으로 한다.

제18조(수업형태) 수업은 주간, 야간, 주말에 실시한다. 단, 필요에 따라 전일제, 계절수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19조(이수학점) 이수학점은 별표3과 같다.

제20조(교육과정)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21조(성적평가) ① 학업성적 평가의 등급 및 점수, 평점은 다음과 같다.

등급	점수	평점
A+	100-95	4.50
A0	94-92	4.20
A-	91-90	4.00
B+	89-85	3.50

B0	84-82	3.20
B-	81-80	3.00
C+	79-75	2.50
C0	74-72	2.20
C-	71-70	2.00
D	69-60	1.00
F	59- 0	0.00

② P(합격) : 논문, 카도쉬성가합창 등의 성적으로 학점은 인정하나 성적계산에는 산입하지 아니하며, 채플은 P/F로 진행하나 학점 및 성적계산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2조(취득학점의 인정) 학업성적 평가결과 교과목별 성적이 "D"등급이상일 때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하며, 신학대학원의 성적 평점평균이 "C0"등급이상이어야 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제23조(학점인정) 학생이 국내·외 타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은 이를 본교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24조(선수과목 및 목회실습) ①선수과목으로 기초 히브리어와 기초 헬라어가 있으며 이때 취득한 학점은 학위취득 소요학점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목회현장훈련(Supervised Ministry)을 실시하며 이 때 취득한 학점은 9학점으로 한다.

제25조(수료 및 졸업시기) 신학대학원 학위과정의 수료 및 졸업의 시기는 매학기 말로 한다.

제26조(논문제출 자격) 논문작성을 원하는 경우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고 각종시험(성서종합시험, 외국어시험,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는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단,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27조(논문심사위원회 구성) 논문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하며 학위청구논문에 관한 내규에 따른다.

제28조(학위수여) ① 제16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학점을 취득하고 소정의 시험을 통과한 자에게 학위를 수여한다. 학위수여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② 제1항에 의거하여 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별표4과 같은 학위를 수여한다.

③ 세부사항은 “학위수여에 관한 내규”에 별도로 정한다.

제5장 외국인 학생

제29조(외국인 학생) 외국인으로서 본 대학원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이어야 하며, 별도의 입학전형에 합격할 경우 정원 외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단, 입학자격 및 졸업자격, 시행 방법등 세부사항은 내규로 따로 정한다.

제6장 상벌

제30조(포상)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에게는 포상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31조(징계) ① 학생이 학칙을 위반하거나 그 밖에 학생의 본분에 어긋난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신학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

② 징계는 근신, 정학, 제적으로 구분한다. 단, 제적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2조(학사경고) 학업성적이 불량한 학생에게 학사경고를 한다.

제7장 직제

제33조(신학대학원장) 신학대학원에는 원장, 부원장, 학생부장을 둔다. 원장은 신학대학원을 대표하며, 교학업무 전반을 총괄한다.

제34조(전공주임교수) 각 전공분야에 주임교수를 둔다.

제35조(담임교수) 담임교수는 목회현장훈련(Supervised Ministry) 반을 6학기동안 지도한다(단, 2016학번까지는 목회실습 반임)

제36조(교학과) 신학대학원의 제반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교학과를 두며, 교학과장과 행정직원을 둔다.

제8장 신학대학원 위원회

제37조(구성) 신학대학원 위원회는 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3인 이내에서 총장이 임명하고 원장이 위원장이 된다.

제38조(임기) 신학대학원 위원회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으며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된 경우 전임자의 잔여기간을 임기로 한다.

제39조(심의사항) 신학대학원 위원회는 총장의 위임을 받아 다음 사항을 심의하여 총장이 시행한다.

- ① 학과 또는 전공의 설치, 폐지 및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
- ②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 ③ 신학대학원에 관한 제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 ④ 학생징계와 포상에 관한 사항
- ⑤ 기타 신학대학원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40조(소집 및 심의) 신학대학원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9장 신학대학원 교수회

제41조(구성) 신학대학원 교수회는 전임교원 중 총장이 임명하는 자로 구성하며 의장은 원장이 된다.

제42조(심의사항) 신학대학원 교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8. 8. 21.>

- ① 입학·수료 및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
- ② 학생지도에 관한 중요사항.
- ③ 총장이 부의 하는 기타 사항.

제10장 부설기관

제43조(부설기관) 다음과 같이 부설기관을 두며 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 ① 목회자료센터
- ② 목회현장훈련센터

제11장 준용규정 등

제44조(준용규정) 신학대학원 학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 대학교 학칙을 준용한다.

제45조(학칙 개·폐) 이 학칙의 개정 및 폐지는 신학대학원 위원회와 대학평의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부칙

- ① (시행일자) 신학대학원 학칙은 2017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② (중전 학칙의 분리·제정) 중전 서울신학대학교 대학원 학칙에서 신학대학원 학칙을 분리·제정한다
- ③ (학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당시 중전의 학칙에 의한 신학대학원은 이 학칙의 신학대학원으로 본다.

[별표 1] 입학정원

과 정	계 열	학 과	입학정원	비고
석사학위과정	인문사회	신학과	160	

[별표 2]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과 정	계 열	학 과	수업연한	재학연한
석사학위과정	인문사회	신학과	3년	5년

[별표 3] 이수학점

과 정	계 열	학 과	이수학점	비 고
석사학위과정	인문사회	신학과	89학점 (논문 6학점 포함)	

[별표 4] 수여학위 종별

과 정	계 열	학 과	수여학위	비고
석사학위과정	인문사회	신 학 과	신학석사(신학)	